

초

점

기

획

③ APEC의 과학기술협력활동

-정상회의의 과학기술협력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목 차

- I. 아·태경제협력체의 개요
- II. APEC의 주요협력사업의 추진현황
- III. APEC 정상회의의 과학기술협력활동
- IV. APEC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EPG 3차 건의서
- V. APEC 과학기술협력추진의 문제점
- VI. APEC 과학기술협력의 증진과 한국의 역할

崔英植

대외정책연구원, 국제정치학 박사

I. 아·태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의 개요

1. APEC의 설립 배경과 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

아·태경제협력체(APEC)는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발족됨으로서 연례 각료회의로 정례화 되었다. APEC은 현재 18개의 회원국과 3개의 옵저버(PECC, ASEAN 사무국과 남태평양도서국협의체(South Pacific Forum: SPF))가 참여하는 최초의 범지역적 정부간 공식협력체이다.

1980년대 말 급격히 변하는 세계 경제환경속에서 민간차원의 역내협력체(1967년 태평양경제협력회의(PBEC), 1968년 태평양 무역개발회의(PAFTAD), 1980년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의 기능은 높아가는 아·태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데에 한계를 나타내게 되었다.

1980년대 말 APEC 출범의 구체적인 배경은 첫째,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둘째, 역내의 경제적 고도성장파 상호

의존도의 심화 셋째, 아·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었다.

한편 APEC 선진국들은 지구환경차원의 당면 문제해결과 역내 무역자유화에 직접 관련된 과학기술협력이 필요했다. APEC 신흥공업국들은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발달된 하부구조의 구축, 기술개발경쟁에 유리한 기술예측체제의 구축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진작을 위한 우선순위의 설정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협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APEC 후진국들은 과학기술을 자국의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APEC 차원의 기술(개발)협력이 필요했다.

2. APEC의 비전, 목적 및 주요원칙

APEC의 비전은 아·태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나아가 개방지역주의를 통해 동아시아와 북미대륙을 연결시켜 궁극적으로는 EU와 결합하여 세계 자유무역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APEC의 장기목표는 첫째, 다자간 개방무역체제의 강화 둘째, 역내 경제활동에 대한 장애제거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투자촉진화의 강화 셋째, 지역의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경제기술협력의 증진이다. APEC의 이러한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원칙은 첫째, 역외지역에도 개방하는 아·태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추구 둘째, 협력을 통한 경쟁 셋째, 호혜(mutual benefit)정신 넷째, 상호존중(mutual respect)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전통적인 원조-수혜자의 남북 종속관계가 아닌) 관계 다섯째, EU와 같은 방대한 관료제도

(bureaucratic system)설치의 지양이다. 또한 3대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음 네가지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첫째, 통관절차에 관한 모든 장애를 제거하는 무역자유화 프로그램 둘째, 국제통상에 영향을 주는 국내 정책의 이질성을 축소하는 무역투자 촉진프로그램 셋째, 무역투자 촉진의 실행에 필요한 정보교환과 역내 하부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 넷째, 국제경제활동의 비용을 높이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경제정책의 조정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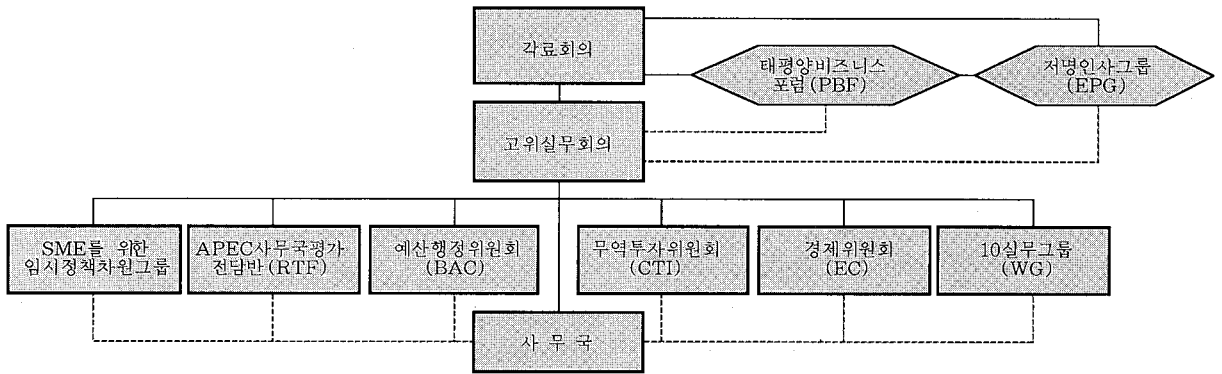
3. APEC의 조직, 주요 기능 및 제도적 특성

1) 조직 및 주요기능

APEC의 조직은 3개의 공식회의(각료회의(Ministrial Meeting), 고위실무회의(SOM), 실무그룹(WG)회의)와 3개의 공식 위원회(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 EC), 예산 행정위원회(Budget and Administrative Committee: BAC) 그리고 1993년 2월에 설치된 APEC 사무국(Secretariat)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공식 조직으로는 자문기구로서 제4차 방콕각료회의에서 합의하여 설치된 저명인사그룹(Eminent Persons Group: EPG), 1994년에 역내 비지네스그룹의 APEC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태평양비지네스포럼(Pacific Business Forum: PBF)과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 시작된 비공식 APEC 경제지도자회의(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중소

〈표 1〉 아·태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기업의 증진을 위한 임시 중소기업 정책차원그룹(Ad hoc SME Policy Level Group), APEC 사무국의 개편을 총괄하는 비공식 APEC 사무국 검토 전담반(RTF) 그리고 7분야(과학기술, 재무, 무역, 환경, 통신, 교통, 중소기업)의 비공식 장관회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참조).

① 각료회의는 연 1회 개최되는 APEC의 최고기관이며, 각 회원국의 외무 통상장관으로 구성되고, APEC의 전반적인 운영방향 및 입장을 정립하고, 중요사안에 대한 고위실무회의(SOM)건의에 대한 승인 및 지침을 제공한다.

② 고위실무회의는 각료회의의 준비를 위해 해당 각료회의의 주최국에서 년 3~4회 개최하는 APEC의 실질적 운영기관이며, 각 회원국의 차관보급 고위실무대표로 구성(주최국 고위실무대표가 의장)되고, 10개 공동협력사업, 역내 무역 투자자유화, 역내 경제현안 및 동향그룹 진전상황, 기타 각료회의의 위임사항 등 APEC 활동 전반에 대한 협의, 결정 그리고 필

요시 각료회의에 건의한다.

③ 실무그룹회의는 10개 공동협력사업을 기획·집행하며, 각 협력사업별의 필요에 따라 연 1~2회 개최하며, 협력사업별 각 회원국 실무자로 구성된다. 10개 실무그룹(간사국)은 교역 및 투자데이터 실무그룹(싱가폴, 일본, 미국), 무역진흥실무그룹((한국(통상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필리핀, 일본, 인니, 중국), 인력자원개발 실무그룹((한국(재경원), 일본, 캐나다, 인니,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필리핀, 중국), 에너지협력 실무그룹(호주), 해양자원보존 실무그룹(캐나다, 인니, 뉴질랜드), 전기통신 실무그룹(미국, 태국, 필리핀), 수산 실무그룹(일본, 뉴질랜드, 태국), 교통 실무그룹(미국), 관광 실무그룹(미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APEC 사무국은 제4차 방콕 각료회의에서 상설사무국 설치의 합의에 따라 의장국 주도 방식(host country leadership)의 회의준비 및 진행과 간사국(shepherd) 중심의 협력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SOM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본일정에서도 보듯이 차별적인 속도(variable speed)”를 적용하는 융통성 있는 추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II. APEC의 주요협력사업의 추진 현황

APEC 협력사업은 크게 3가지 협력활동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첫번째 협력사업은 경제위원회(EC)에서 담당하는 APEC 경제동향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대화 및 현안을 분석하는 협력활동, 두번째 협력사업은 무역투자위원회(CTI)가 담당하는 역내 무역자유화와 투자의 활성화에 대한 협력활동, 세번째 협력사업은 10개의 공동협력실무그룹(WG)에서 담당하는 분야별 공동협력사업으로 나누어진다.

공동협력사업 중에서 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주요 공동협력분야들의 목적과 협력활동을 살펴본다. 10개 공동협력분야의 목적은 분야별로 공동협력사업 및 정책협조를 통해 아·태국가들에게 공동의 경제적 실익제공과 함께 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협력사업별의 주요 활동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산업과학기술(IST)협력사업의 활동 내용과 주요 추진협력프로그램은 지정조정국(leading shepherd)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중이다. 현재까지 제9차의 실무그룹회의가 개최되어 오는 동안 10개의 공동협력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1995년 대전에서 제1차 Technomart가 개최되었다. 금번 제1차 APEC 북경 과학기술각료회의에서 28개의 신규공동협력사업이 채택되었다. 1993년 6월 시애틀 SOM에서 산업과학분야를 추가하고,

실무그룹(WG)의 명칭을 “투자 및 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으로 1차 개칭하고 1994년 9월 일본 히메지 SOM에서 투자가 산업과학기술의 내재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투자를 생략하여 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ISTWG)로 개칭했다.

- 인력자원개발 협력사업의 주요 활동은 경제개발, 기업경영, 산업기술별로 Network구성의 완료 그리고 세부계획이 시행 중이며, APEC 참가국간 교육훈련 파트너쉽 형성(미국, 일본)과 APEC 교육 forum 설치 및 APEC 교류협력이다. 그리고 1996년 초에 HRD 각료회의가 필리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통신협력사업의 주요 활동은 APEC 통신협력의 증진을 위해 3개의 세부사업 조정국 선정과 협력사업을 추진이다: 전기통신환경자료 수집·발간(조정국: 미국, 한국, 인니), 전기통신 인력자원개발(조정국: 태국, 캐나다), 역내 정보통신망 구성 및 기술협력, Electronic Data Interchange(조정국: 뉴질랜드), Teleports(조정국: 일본).

- 에너지협력사업의 주요 활동은 APEC 에너지 협력을 위한 5개 세부사업의 조정국을 선정하여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에너지 수급 관련의 정보교환(조정국: 한국), 에너지와 환경(조정국: 호주), 에너지 효율성과 보존(조정국: 미국),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조정국: 일본)과 자원 탐사 및 개발 등이다.

III. APEC 정상회의의 과학기술 협력 활동

APEC 과학기술협력의 특징은 APEC 회원국들의 이질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APEC 회원국들의 경제·정치·과학기술의 체제와 발달도의 다양성은 선진국과 선진국간, 선진국과 후진국간, 후진국과 후진국간,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간의 모든 형태의 과학기술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지난 5월 태평양경제협력회의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PECC)의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Implementing the APEC Bogor Declaration)에 따르면 APEC 전반에 걸쳐 제안·실행되고 있는 총 사업은 현재 약 200여개로 집계되고 있다. 그 중 2/3는 협력(cooperation)에 관련된 사업인데 주로 10개 분야의 실무그룹(WG), 3개의 공식위원회와 비공식 장관회의 등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APEC 차원의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이 제시된 기본틀의 마련없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노출되었다. 특히 APEC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식이 서로 다른 선진회원국과 후진회원국간의 갈등은 근본적인 조정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과학기술협력 부진의 근본원인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시도되었다. 1993년 Seattle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6대 중점분야에 대한 APEC 실천프로그램(APEC Work Program)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필리핀의 라모스 대통령은 아·태지역의 90% 수출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진흥을 위한 APEC 차원의 과학기술협력사업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교환센터 를 추가로 발의했다. 1994년 제2차 Bogor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각료들과 고위실무자들에게 2020 무역투자자유화의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1995년 Osaka 정상회의에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영삼 대통령은 APEC 차원의 통신기술 하부구조기반의 구축을 위한 "아·태 초고속정보통신기반(APII)"을 발의했고, 필리핀의 라모스 대통령은 APEC 과학기술인력자원을 증진하기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APEC HRD 장관회의의 개최를 발의했으며, 중국의 강택민 주석은 APEC 과학기술협력의 강화를 위한 "지역과학기술협력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장관회의"를 발의했다. 그리고 지난 달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정근모 과기처장관을 통해 제2차 APEC 과기각료회의를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여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내는 과학기술 정상외교의 성과를 거두었다.

1. APEC Seattle 정상회의와 과학기술협력 이니셔티브

1) 6대 중점분야에 대한 APEC 실천프로그램(APEC Work Program)

제1차 APEC 경제지도자회의에서 정상들은 비전 선언문(Vision Statement)을 통해 6대 중점분야에 대한 APEC 실천프로그램(APEC Work Program)을 공동 발의했다.

이 중 과학기술과 관련된 세분야는 첫째, 교육협력(Education Cooperation)분야 둘째, 중소기업협력(Cooperation on SMEs)분야 셋째, 훈련과 기술개발, 통신과 교통체제 그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공동목표(shared goal)에 대한 분

야이다.

1995년 APEC 자카르타 각료회의에서 APEC 실천프로그램의 진행결과에 대한 캐나다의 경과 보고서(APEC 1994 Work Program)를 살펴보면, 교육협력분야에서는 HRD 실무그룹(WG)을 통해 APEC 차세대 프로그램(APEC Next Generation's Program)이 APEC 회원국간의 차세대 지도자들간의 친목과 이해를 증진하고, 장래 교육과 연관된 정보 기술교육의 활용방법과 경험을 쌓는 HRD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주도하에 개발되었다. 중소기업협력분야에서는 10개 WG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일환으로 HRD 실무그룹에서 "중소기업과 경제발전(SMEs and Economic Development)"과 통신 WG에서 "전자데이터 교환의 채택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애로"에 관한 연구보고 등이 제시되었고, 특히 중소기업 관련 장관회의가 중소기업의 정책대화의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중소기업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발히 추진되게 되었다.

끝으로 공동목표에 대한 분야에서는 HRD WG를 통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APEC 지역의 산업기술과 HRD 전략"에 대한 연구와 "역내 지속성장의 협력을 위한 APEC 환경비전선언문"이 채택되고, 또한 해양자원보존 WG에서는 "적조/독조류의 방지책"에 대한 프로젝트 등이 제안·추진되었고 에너지 WG에서는 "재생가능한 기술의 기술협력지침서" 등을 발간했다.

2) APEC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교류와 훈련 센터(APEC Center for Exchange and

Training for SMEs: ACTETSME)

1993년 제1차 비공식 APEC 경제지도자회의에서 필리핀의 라모스 대통령에 의해 발의된 "APEC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교류와 훈련센터"의 건물이 Laguna에 있는 필리핀 대학의 Los Bonos 과학기술공원(S&T Park)에 1995년 2월 시공되어 1996년 9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아·태국가의 기술이전과 상호보완성의 제고를 위한 지원과 장려 등의 5대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ACTETSME는 1995년 4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비공식 SME 정책차원그룹의 기술과 기술공용 중점 정책의 실천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실천프로그램은 우선 단기 "중점 과제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정보니드와 훈련 기회에 관한 설문조사"와 ACTETSME를 위한 조직 워크샵 그리고 중기과제로 "ACTETSME를 위한 비즈니스 계획의 완료"가 추진 중이다.

2. APEC Bogor 경제지도자회의와 과학기술협력 이니셔티브

APEC의 발전 과정이 무역자유화의 목표설정(target-setting)단계에서 실행(implementation) 단계로 전환함에 따라서 Bogor 경제지도자의 공동결의선언에는 경제·기술협력에도 무역·투자 자유화와 동일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APEC Bogor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detailed proposals for implementation)을 마련하라고 APEC 각료들에게 권고했다.

1995년 2월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1차 SOM에서는 중장기 실행의제(Action Agenda)를 작성하기 위해 무역자유촉진화(Trade Liber-

alization and Facilitation)의 실행프로그램(Action Program) 작성을 전담하는 특별(special) SOM과 경제·기술협력(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의 실행프로그램(Action Program) 작성을 전담하는 일반(regular) SOM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Osaka 각료회의에 양대 실행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하나의 실행의제(Action Agenda)로 최종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제2차 SOM에서 Bogor 선언의 집행을 위한 실행의제(Action Agenda for the Implementation for the Bogor Declaration)의 기본틀이 심의되었다. 본 실행의제의 틀을 바탕으로 13개의 협력분야의 실행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Osaka 회의의 최종 준비를 위해 열리는 SOM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1) APEC 경제 기술협력을 위한 실행 프로그램(Action Program)의 틀

지난 7월 제2차 SOM에서 결정된 '보고르 선언의 집행을 위한 실행의제안'의 Part II에 해당되는 경제·기술협력 실행프로그램의 틀은 크게 경제·기술협력의 세가지 핵심요소를 다루는 부문과 실행프로그램을 수립하는 13개의 협력분야를 다루는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경제 기술협력을 위한 세가지 핵심요소들: 기본정책개념(목적, 기본원칙, 우선순위), 공동사업(데이터 정보의 공동협조 관리, 설문조사, 지침서의 작성, 훈련, 세미나, 연구, 기술 전시, 회원국들의 정책/활동을 위한 대화(회원국들은 독자적인 기본정책개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의 경험과 견해를 교환하고 기본

정책개념들 안에서 서로의 정책에 대한 협의).

② 경제 기술협력의 실행프로그램을 수립하는 13개의 협력분야: 10 실무그룹(WG)분야(해당 WG회의의 결과와 해당각료회의 결과에 기초), 중소기업협력분야(SME 정책차원그룹회의와 중소기업장관회의의 결과에 기초), 경제하부구조협력분야(Economic Infrastructure: 해당 APEC 회의의 결과에 기초), 농업기술협력분야(농업기술협력을 위한 전문가그룹회의의 결과에 기초).

* '보고 선언의 집행을 위한 실행의제안'의 Part I에 해당되는 무역자유·촉진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제·기술협력의 해당분야(표준과 조화, 통관절차,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는 경제·기술협력이라도 Part I에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2) 제1차 APEC 통신 정보산업장관회의

Bogor 경제지도자회의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발의한 아·태초고속정보통신기반(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APII)에 대한 제1차 APEC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가 1995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본 장관회의에서 APEC 통신 정보산업 장관들은 역내 무역·투자의 촉진을 위해 APII를 구축하고 APII의 추진에 대한 5대 목표와 10대 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APII 서울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APEC 통신 정보산업장관들은 APII 추진을 위한 5대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방안과 오는 11월 Osaka 경제지도자회의에서 논의될 실행의제의 중요한 기초가 될 실행프로그램을 전기

통신 실무그룹(WGT) 회의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표명된 "APEC 통신·정보산업공동발표문"을 채택하였다. 끝으로 장관들은 APII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실행계획의 진전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가 중요하다는 공동인식 하에 호주의 제2차 APEC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의 개최를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3) HRD 장관회의의 이니셔티브

제6차 APEC 자카르타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HRD 선언의 집행을 위한 실행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필리핀의 라모스 대통령은 APEC Bogor 경제지도자회의에서 1996년 1월 마닐라에서 HRD 관련장관회의의 개최를 발의했다.

지난 1월 11차 HRD 실무그룹회의에서 HRD 장관회의를 1995~1996 HRD 실천계획의 중점활동으로 포함시키고 본 회의의 주제를 "HRD를 통한 무역·투자자유화 혜택의 극대화"로 채택하였다.

HRD실행계획의 집행을 위해 제안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의 계기가 마련될 HRD 장관회의는 1996년 1월 10~11일간 마닐라에서 열기로 하고 장관선언문과 회의주제 그리고 자카르타 HRD 선언의 실행에 대한 준비회의를 10월 26~27일에 전문가회의와 8~9일에 SOM를 각각 열기로 하고 본 장관회의에서 아래의 4분야를 중심의제로 토의하기로 합의했다: 첫째, 자원보완성의 관리통제 둘째, 기술숙련과 노동규격화를 통한 인력가치의 극대화 셋째, 노동시장과 투자에 관한 정보의 원

활한 유통을 통한 人力잠재력의 현실화 넷째, 문화다양성의 관리.

4) 제1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APEC Ministerial Conference on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제1차 APEC 과학기술장관회의는 1994년 제2차 APEC Bogor 경제지도자회의를 통해 중국의 강택민 국가주석이 APEC 과학기술협력의 강화를 위해 제안한 "지역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APEC 과학기술장관각료회의"가 북경에서 금년 10월 초 17개의 회원국과 APEC 사무국으로부터 총 19명의 대표자들(2인의 일본대표)의 참석으로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북경각료회의에서 장관들은 본 회의 결과와 APEC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4대 공동정책목표, 7대 원칙, 28개의 협력과제 채택 그리고 내년 말경에 차기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의 서울 개최에 대한 승인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북경 APEC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IST 실행프로그램의 승인과 공동발표문이 채택됨으로써 최초로 APEC 산업과학기술(IST)협력의 비전과 원칙이 제시되어 협력정책의 기본틀을 향한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에서 금번 과학기술 장관회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처 장관의 공동연구주제의 지명연설문을 통해 첫째, 선진국(미국, 일본)의 대형 국제공동연구사업을 APEC 회원국들에게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공동연구사업선정의 고려사항으로써 APEC 경제 산업발전의 파급효과, 회원국의 유용자원 및 관심 등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셋째, 이를 IST실무

그룹회의를 통해 구체화 시켜나갈 것을 요청하고 넷째, 협력사업의 추진시 회원국의 균등한 참여와 책임이 동시에 따라야 함을 아울러 강조하고, 끝으로 APEC 회원국간의 공동연구의 촉진을 위한 국제적인 규범이나 국제분쟁에 대비한 사례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함으로써 우리의 IST 협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1차 회의에 참여하여 제2차 APEC 과학기술자료회의의 서울 유치에 이끌어 냄으로써 앞으로의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한 과학기술협력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5) APEC Osaka회의의 의장국의 경제·기술 협력안

APEC Osaka회의의 의장국인 일본은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인력개발(HRD), 산업과학기술(IST), 정보통신, 에너지 등 13개 분야의 협력추진방법을 담고 있는 실행의제에 대한 의장국안을 지난 달 중순에 SOM을 통해 조정작업에 들어 갔다. 동 안은 경제·기술협력은 원조국과 피원조국의 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과 중립국 원조를 기본으로 하는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APEC 비즈니스자원봉사자프로그램과 같은 인력개발의 추진과 IST 공동연구지침서의 작성과 중소기업의 훈련프로그램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경제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하부구조로서 아·태정보통신기반(APII)의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프로젝트의 추진을 강조하면서 역내 무역투자 DB의 개발, 무역박람회와 기술박람회를 추진하는 계획도 담고 있다.

① APEC 에너지 공동체

일본은 APEC 무역자유화가 실행단계로 들어감에 따라 역내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회원국들간의 심화될 경제격차를 줄이고, 또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APEC 에너지 공동체의 창설계획을 의장국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역내 에너지연구센터를 통산성 산하의 에너지경제연구소내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1996년 중반부터 에너지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1997년까지는 에너지수급에 대한 예측을 마칠 계획이다.

② Partners for Progress(PFP) 프로그램

일본 외무성은 1994년 APEC 자카르타 자료회의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개발협력을 위한 PFP 프로그램을 지난 7월 제2차 SOM에서 경제·기술협력을 위한 실행프로그램의 공동사업(Joint Activities) 프로그램(기술협력에 초점을 둠)으로 변경하여 PFP 프로그램을 다시 제안했다. PFP의 목적은 APEC 회원국의 특성을 존중하면서 인재육성과 기술이전 등의 경제·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메카니즘(PFP unit)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의 실행을 위한 PFP의 원칙과 5단계의 프로그램절차가 제시되고, PFP Unit의 조직으로는 PFP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소규모의 staff로 구성된 정보통제소(clearing house)를 APEC 사무국과는 별도로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PFP의 추진을 위해 참가회원국에 참가비용 및 국제협력단의 지원시설을 제공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PFP의 문제점은 APEC의 기본원칙

인 상호존중과 호혜정신에 어긋나는 대외원조(원조국이 수혜국의 정책의제를 결정하는 전통적인 남북의 종속적 관계)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일본의 역내 기득권을 의식하는 선진회원국들로 부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일본 중심의 지역경제권(일본의 경제발전모델,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는 동아시아 국가군)의 형성에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는 회원국이므로 APEC 상호존중의 기본원칙을 앞세워 일본을 상당히 견제할 전망이다. PFP를 통해 침체한 일본경제를 회복해보려는 일본이 어떠한 절충안으로 대응할지 모르나 PFP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V. APEC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EPG 3차 건의서(Implementing the APEC Vision)

1. APEC 기술(개발)협력의 증진을 위한 4대 실행계획(four-point Action Plan)

Bogor 정상회의에서 경제지도자들은 EPG에게 기술(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APEC의 발전에 대한 평가를 권고했다. EPG는 지난 8월 발간된 3차 보고서에서 APEC 차원의 기술(개발)협력의 균형적인 증진을 위한 청사진을 APEC 출범이래 처음으로 제시했다. EPG 건의서의 기술(개발)협력을 위한 기본틀의 핵심골격인 4대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첫째, APEC 기술(개발)협력을 위한 9개의 운영원칙의 채택 둘째, 운영원칙의 준수를 위한 기술협력이니셔티브(TCI)의 출범 셋째, 기술협력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의 자유화 넷째, APEC 인프라 2020(INFRA 2020) 프로그램의 우선정책과 APEC 차원의 인프라벤치마킹 프로그램의 조속한 추진이다.

특히, 4대 실행계획의 두번째 항목인 TCI의 4가지 기본활동영역은 첫째, APEC 회원국의 기술협력 우선에 대한 선언문을 작성하고 둘째, 기술협력 대책반(Task Force)를 구성하고 셋째, 기술협력의 틀을 수립하고 넷째, 자발적인 APEC 기술협력기금의 조성 등으로 전례없는 구체성을 띄고 있다.

2. APEC 기술이전의 증진

EPG는 또한 기술협력에 있어서 민감한 기술이전의 증진에 대한 원칙을 처음으로 정식 건의함으로써 APEC 기술협력분야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APEC 기술이전을 위한 비구속적 원칙은 첫째, 기술이전에 대한 규제철폐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 둘째, 생산, 무역, 환경 그리고 통신분야 등에서 기술의 활용을 장려 셋째, 후진회원국에 대한 우선적인 기술이전의 장려 넷째, 위험성이 높은 기술의 이전에 대한 보장을 장려 다섯째, 지적재산권의 보호이다.

EPG가 처음으로 기술이전에 대한 원칙까지 제시하면서 APEC 기술(개발)협력의 증진을 위한 4대 실행계획을 건의했다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APEC 기술협력의 범위를 무역자유화를 위한 기술협력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으로 넓혀 새로운 APEC 기술협력틀을 수립한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단지 기술협력의 추진절차에 대한 4대 실행

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실행에 대한 승인까지 downpayment의 일부로 받아 내어 APEC기술(개발)협력에 대한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권고안이다.

그러나 현재의 APEC 상황으로 볼 때, 제시된 4대 실행계획 중 주요원칙은 앞으로 토론의 시발점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으나 나머지 3대 실행계획은 승인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첫째, Osaka회의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실행프로그램에 대한 토의에 집중될 것이고 둘째, APEC의 각료들이나 고위실무자들이 아직 기술(개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 관계로 동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초작업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V. APEC 과학기술협력추진의 문제점

1. APEC의 이질적 특성에서 오는 구조적인 갈등

APEC의 기본목적과 추진방법은 APEC 지역의 경제활동에 대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무역자유(투자촉진)회의 목표와 APEC 회원국들의 경제격차를 줄이기 위한 경제·기술협력 목표의 달성을 아·태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추진하는 접근방법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APEC 무역자유화의 목표설정단계에서 집행단계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볼 때 두 가지 목표가 균형있게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서 실제 접근방법에서 근본적인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강력한 협상(negotiation)을 통해 목표를 추구하

는 미국식 접근방법을 선호하는 그룹은 현재 APEC의 무역자유화 과정이 회원국의 개별적 자체판단에 의해 느리게 추진되는 데 대해 불만인 반면에, 협상보다는 협의(consultation)를 통해 추진하는 '아세아식' 접근방법을 선호하는 그룹은 미국을 중심으로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무역자유화의 과정에 비해 경제·기술협력의 추진과정의 부진에 따른 불균형에 대해 우려와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불행하게 경제·기술협력분야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무역자유화에 직접 관계있는 단기적인 기술협력을 선호하는 그룹과 APEC의 장기적 차원에서 균형적인 경제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을 선호하는 그룹간의 이해갈등은 자못 심각하여 APEC 과학기술협력의 추진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던져 주고 있다. 그런 결과로 경제개발에 관한 기술협력을 위한 과학기술협력이 APEC 출범 이후 아직도 APEC 공식회의의 의제화되지 못함에 따라 APEC 과학기술협력의 균형있는 증진을 위한 장기 비전과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된 APEC 과학기술협력사업은 APEC 경제개발을 위한 단체(collective)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보다는 회원국의 당면문제해결과 무역자유화를 위한 자체부담의 단독적인(unilateral) 과학기술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를 낳게 되었다. 단독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과 단체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의 결합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근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 정상회의의 과학기술협력 이니셔티브가 강력하게 추진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APEC 사무국의 제5협력사업과의 모니터

링 뿐)이 절대부족한 관계로 일각에서는 정상회의 과학기술협력 이니셔티브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비판의 무마용에 불과하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그리고 top down式的 정상회의 과학기술협력프로그램과 bottom up式的 실무그룹 과학기술협력프로그램과의 조정과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을 빚고 있다.

2. APEC의 제도적 취약성과 문제점: 중복성

APEC 과학기술프로그램 관리체제의 미비에 따른 중복성의 증가로 APEC 과학기술협력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과학기술협력 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한 합의가 회원국간에 아직도 도출되지 못한 상태이고, 기존의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과의 조정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APEC 전반에서 실시되고 있는 과학기술협력 프로젝트나 제안들이 공식 차원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파악이 된다하더라도 중앙기금에 의한 사업제안만이 APEC 사무국에 의해 파악되는 관리체제하에서는 APEC 전반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전반적인 협력사업은 파악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중앙기금에 의한 협력사업이나 제안만의 파악은 자체 조달하는 프로젝트가 늘고 있는 추세에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에 저명인사그룹의 3차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APEC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4대 실행계획은 경제개발에 관한 기술협력이 APEC 공식회의에서 처음으로 의제화될 전망이어서 그 기대가 자못 크다. 따

라서 앞으로 APEC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청사진의 제시를 통해서 수립되는 기본틀 속에서 균형있게 추진되는 역내 과학기술협력 과정에 있어서 한국의 의미있는 역할은 한층 더 기대 되고 있다.

Ⅶ. APEC 과학기술협력의 증진과 한국의 역할

1. 한국의 APEC에 대한 입장

한국은 APEC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안정과 번영의 장치를 모색해야 하는 한국의 장기적 안보전략과 직결된다는 판단하에 일방적인 강대국 위주의 안보외교에서 APEC을 통한 안보외교의 다원화를 추구할 적극적인 입장이다.

APEC은 한국에게 세계적인 개방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선택과 대강대국 통상압력, 중국과 개도국들에의 무역 투자기회 확대(전체 수출 중 對APEC 수출의 비중은 약 70%, 그 중 약 41%가 對아시아 시장) 그리고 EU나 NAFTA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경제 질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한국은 호주와 함께 APEC의 창설을 주도했고 APEC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선진공업국과 후발공업국과의 중간자로서 두 세력간의 정치·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자국의 경제·기술개발 등의 경험을 활용하여 조정자적 역할의 수행을 자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성공을 위해 국내 기술혁신능력의 제고에 우선을 두고 APEC을 핵심기술원천의 다변화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

해 쌍무적인 기술협력과 다자적인 기술협력의 병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메랑효과를 우려해 ASEAN 국가들과의 기술협력(기술교육 훈련분야 제외)에는 활발하지 못한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APEC의 추진과정이 무역자유화의 목표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던 상황과 우리의 수출대상지역이 더욱 다변화 [1995년 기준의 전체 수출비율: 선진국(40%) 對 후진국(60%)]될 전망과 APEC 회원국간의 南南 기술협력 추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예상되는 위험부담(calculated risks)도 다소 감수한다는 자세로 과감한 과학기술외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APEC 과학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촉매자적인 역할을 활발히 펼쳐 나간다는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2. 한국의 APEC 과학기술협력의 추진을 위한 과제

첫째, 최근 미국 방문시 김 대통령이 제시한 21C 선진과학기술입국에 대한 장기 비전의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APEC 과학기술협력의 청사진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협력정책은 기존의 특정산업기술획득을 위한 소극적인 접근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국가공공정책 전반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의 과학기술협력정책으로의 탈바꿈; 중간진입의 전략을 통한 자체 기술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개혁; 2000년대까지 GNP 5%의 과학기술개발 투자; 국제공동연구예산의 대폭적인 증액과 국제공동연구 인력개발의 획기적인 정책 강구 등.

둘째, APEC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과학기술 외교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

기술치는 기술협력 외교기능을 강화(외무부에서 실시하는 "국제회의 전문요원과정"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외교협상력을 제고); 외무부는 자체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전담기구(미국의 OES와 유사한)를 설치; 과학기술처와 외무부간의 기술협력정책의 조정 강화를 위한 제도의 구축; 청와대는 정상을 통한 APEC 과학기술 외교를 전담하는 과학기술 정상의교 비서관 제도를 신설.

3.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전략방안

APEC 중진국의 기수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한국은 APEC의 장기발전을 위한 균형적인 추진원칙에 대한 확고한 입장의 천명과 구체적인 협력프로그램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APEC 과학기술협력의 균형적인 추진에 필요한 장기적 비전과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는 기본틀의 수립을 위한 APEC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데 한국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APEC 과학기술협력정책을 전담하는 APEC 공식 지원기구로서 "과학기술협력위원회(Committee on S&T Cooperation)"의 설치를 한국은 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APEC 과학기술 인력자원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조치로서 퇴임한 역내 저명한 과학기술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APEC 과학기술자원봉사자프로그램(APEC Science and Technology Volunteer Program)"의 창설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APEC 사무국의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의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제안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복성을 줄이기 위한

기존의 역내 과학기술협력기구들(PECC, ESCAP, APCTT 등)과의 조정 강화를 위한 메카니즘의 설치를 제안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과기처, 제1차 북경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 참가, 1995. 10.
- 2)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ouse of Representatives, One Hundred Third Congress,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 and U.S. Policy Toward Asia,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November 1993
- 3) APEC, A Vision for APEC, First Report of the Eminent Persons Group, October 1993
- 4) APEC, Achieving the APEC Vision, Second Report of the Eminent Persons Group, August 1994
- 5) APEC Secretariat, Selected APEC Documents: 1989~1994, February 1995
- 6) APEC Secretariat, "Newsletter," April 1995
- 7) APEC Ministerial Meeting on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Industry, "Joint Statement," May 1995
- 8) Australia-Japan Research Centre, Implementing the APEC Bogor Declaration, June 1995
- 9) APEC Secretariat, "Agenda," The Second Senior Officials Meeting for the Seventh APEC Ministerial Meeting, July 1995
- 10) APEC, Implementing the APEC Vision, Third Report of the Eminent Persons Group, August 1995
- 11) APEC Secretariat, "List of On-Going Projects," September 1995
- 12) APEC Secretariat, "Summary Conclusions of the Ninth APEC Working Group Meeting on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September 1995
- 13) APEC Secretariat, "Joint Communique," APEC Science & Technology Ministers' Meeting, October 1995